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201)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6. 14

제 출 자 : 달성군  


### 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 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정이유

2005. 8. 17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이 전면개정·시행됨에 따라 “사전재해영향성  
검토협의” 제도가 도입되었으며, 재해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 
위하여 동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「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」의  
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검토위원회의 기능(안 제2조)
  -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 
재해위험요인, 재해영향, 재해저감계획 등의 사항 검토
- 검토위원회 구성 및 임기(안 제3조, 제4조)
  -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  -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함
  -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 
경우 해촉할 수 있음

- 검토위원회는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고,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회의 소집(안 제6조)
- 검토의견 제출(안 제8조, 제9조)
  - 위원은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고, 위원장은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(군수)에게 제출함
- 출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(안 제12조)

#### 4. 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#### 5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: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제5항
- 입법예고 : 2006. 04. 20 ~ 2006. 05. 09 (특이사항 없음)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
1.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
2.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3.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
4.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

**제3조(위촉 및 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.

②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

**제4조(임기 및 해촉)**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.

②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공적 · 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
2. 위원회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
3.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
4.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 등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회의 등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.

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간사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
1.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
2.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

## 3.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

## 4.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

**제8조(검토의견 제출)** 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,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현지조사)**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, 사업시행자, 사업승인기관,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위원의 공정검토 의무)** ①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,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,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회의록)**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,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.

1. 개회·폐회 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성명
3. 검토사항
4. 토의진행사항

5. 위원발언 내용
6.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
7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제7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대구광역시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3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